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5159294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하대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정인희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032,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7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북 고령시 C 일원의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 시행자이자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E는 위 공사의 위탁자이자 발주자이며, 주식회사 F(이하에서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위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F과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와 E는 2020. 11.경 F과 사이에, 원고와 E가 F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87,438,800,000원(2021. 10. 7. 87,280,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1. 1. 29.부터 2023. 9. 29.까지 32개월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1) F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들과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 및 하수급인들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등에 따라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G	2022. 1. 1.	584,806,000	2022. 1. 1.	2022. 9. 14.
H	2021. 7. 24.	1,588,642,000	2021. 7. 24.	2022. 9. 14.
I	2021. 9. 1.	단가계약	2021. 9. 1.	2022. 9. 14.
J	2021. 2. 1.	3,382,000,000	2021. 4. 1.	2022. 9. 14.
K	2021. 9. 1.	단가계약	2021. 9. 1.	2022. 9. 14.
L	2022. 9. 28.	127,490,000	2022. 9. 28.	2022. 10. 4.
M	2021. 9. 1.	18,669,000,000	2021. 9. 1.	2022. 9. 14.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022. 10. 14.	49,613,960	I
2022. 10. 14.	26,355,670	K
2022. 10. 17.	1,629,053	L
2022. 10. 19.	10,000,000	J
2022. 10. 19.	180,000,000	M
2022. 10. 19.	12,200,000	H
2022. 10. 19.	5,139,000	G
합계	284,937,683	

라. 선급금보증계약 체결과 선급금 지급 등

1) F은 2021. 4. 7.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5,500,000,000원', 보험기간 '2021. 4. 7. 부터 2023. 9. 3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21. 4. 13. F에 선급금으로 5,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선급금보증서에 첨부된 피고의 선급금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 등

원고가 2022. 10. 26. F의 2022. 9. 30.자 부도발생을 그 사유로 들어 F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고, F과 N공제조합의 입회하에 기성고 검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확정검사 기성조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채무확정검사 기성조서

1. 공사명: O 신축공사(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등)

사업명: P 공동주택 차입형 토지신탁

2. 위치: 경상북도 고령시 C 일원

3. 계약금액: 87,28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타절금액: 32,581,100,000원(37.33%.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타절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액과 선급금액 미반영 금액입니다)

5. 금회 기성금액: 223,900,000원(0.26%,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타절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액과 선급금액 미반영 금액입니다)

6. 착공일: 2021. 1. 29.

7. 준공예정일: 2023. 9. 28.

8. 타절사유: F의 부도발생

상기 공사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2022. 10. 26.부로 타절 정산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022. 10. 26. F의 기성금액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타절하였고, 타절정산 이전 당사자 간의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사에 총 284,937,683원을 지급하였기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바, 보험금 3,461,000,000원(기지급 선금 5,500,000,000원에서 기성정산금액 2,039,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4.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23. 4. 28. 선급금 보증금으로 3,238,967,673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금으로 당연 충당됩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만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선금정산에 관한 위와 같은 원칙적 정산방법과 다른 정산방법을 약정할 경우, '선금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공사도급계약은 선금정산에 관하여 다른

정산방법을 약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 정산방법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타절금액 222,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반환대상 선금으로 총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의 청구금액에서 15회차까지의 기성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 32,327원 및 타절정산금액 22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제외한 3,238,967,673원을 2023. 4. 28. 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등

-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2. 10. 14.부터 2022. 10. 19.까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2. 10. 26. 타절 당시 F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기성공사대금 220,032,327원(= 220,000,000원 + 32,327원)을 미지급된 기성공사대금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F에 기성공사대금 220,032,32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증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은 선급금에서 당연 총당되어야 한다.
- 3) 쟁점의 정리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선급금 보증금 중 위 220,032,327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었음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결국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위 220,032,327원이 선급금 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피고가 2021. 4. 7. 원고가 F에 지급한 선급금 합계 5,500,000,000원 중 정산금으로 총당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이행을 보증하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의 부도로 인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선급금 반환사유(보증사고)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선급금 보증금의 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그리고 그 선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과 범위는 보증의 대상으로 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금에서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공정한 부분도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선금에서 충당되고, 이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상당액은 선금에서 충당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없다면,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해지 전에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선금에서 충당하지 않기로 수급인과 사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7362 판결 등 참조).

나)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참조).

따라서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라 할 수 있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동의나 사후 약정 등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부분 또는 그와 같은 지급 예정분을 선급금의 총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보증보험자가 위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을 선급금보증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산약정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F 및 하수급인들이 기초 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고,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으로 합계 284,937,683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되던 당시의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불 부분을 선급금 총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을 두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하도급 직불금의 총당제외에 관한 예외적 정산약정이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을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의 정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F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은 '기정산금에다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당연 총당되는 220,032,32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3,238,967,673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가 2023. 4. 28. 원고에게 3,238,967,673원을 전부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남아있는 선급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민정

별지